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941호 2013. 2. 4.(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10호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 1

공 고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1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4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160호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계획
공고 ----- 10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3-123호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고 ---- 12

회 람								
--------	--	--	--	--	--	--	--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 - 10호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서구 오류동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일원에 설치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58점)을 고시합니다.

2013. 2.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 요

1. 지적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이하 좌표와 같음)
2. 좌표

일련번호	명 칭	좌 표	
		X좌표(m)	Y좌표(m)
별지참조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 소재지 : 서구 오류동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일원
- 측량연월일 : 2012년 12월 5일[지적도근점 58점]

4. 측량성과보관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및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북부지사

■ 열람안내

-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하는 분은 토지정보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 지 】

지적기준점

일련번호	명칭	세계측지계좌표		중부좌표		비 고
		x	y	x	y	
7726	지적도근점	550933.786	165299.295	450627.58	165228.74	
7727	지적도근점	550990.048	165442.907	450683.84	165372.35	
7728	지적도근점	550889.077	165471.183	450582.86	165400.63	
7729	지적도근점	550948.778	165617.048	450642.56	165546.50	
7730	지적도근점	550963.091	165738.086	450656.88	165667.54	
7731	지적도근점	551024.088	165840.425	450717.87	165769.88	
7732	지적도근점	551037.121	165953.336	450730.91	165882.79	
7733	지적도근점	551083.272	166050.546	450777.06	165980.00	
7734	지적도근점	551118.331	166189.306	450812.12	166118.76	
7735	지적도근점	551172.663	166310.099	450866.45	166239.55	
7736	지적도근점	551282.726	166266.389	450976.50	166195.83	
7737	지적도근점	551428.087	166229.613	451121.85	166159.05	
7738	지적도근점	551479.543	166377.687	451173.31	166307.13	
7739	지적도근점	551683.664	166308.873	451377.41	166238.31	
7740	지적도근점	551753.029	166456.087	451446.79	166385.52	
7741	지적도근점	551656.483	166507.973	451350.25	166437.41	
7742	지적도근점	551543.337	166566.144	451237.11	166495.59	
7743	지적도근점	551392.269	166617.794	451086.05	166547.25	
7744	지적도근점	551273.504	166629.940	450967.29	166559.40	
7745	지적도근점	551215.438	166482.237	450909.23	166411.70	
7746	지적도근점	551101.431	166499.151	450795.23	166428.62	
7747	지적도근점	550971.297	166563.339	450665.10	166492.81	
7748	지적도근점	550865.152	166589.976	450558.96	166519.45	
7749	지적도근점	550822.113	166421.034	450515.92	166350.51	
7750	지적도근점	550811.549	166286.902	450505.35	166216.38	
7751	지적도근점	550761.682	166160.777	450455.49	166090.25	
7752	지적도근점	550730.185	166018.751	450423.99	165948.22	
7753	지적도근점	550737.771	165868.094	450431.57	165797.56	
7754	지적도근점	550701.076	165717.874	450394.87	165647.34	
7755	지적도근점	550680.578	165552.390	450374.37	165481.86	
7756	지적도근점	550724.954	165450.597	450418.74	165380.06	
7757	지적도근점	550642.424	165277.653	450336.21	165207.12	
7758	지적도근점	550782.241	165132.457	450476.03	165061.92	
7759	지적도근점	550891.710	165019.445	450585.50	164948.90	

7760	지적도근점	550961.809	164947.227	450655.61	164876.67	
7761	지적도근점	551008.718	165009.556	450702.52	164939.00	
7762	지적도근점	550862.171	165900.123	450555.94	165829.57	
7763	지적도근점	550891.053	166011.430	450584.82	165940.88	
7764	지적도근점	550940.040	166109.598	450633.81	166039.05	
7765	지적도근점	550965.730	166228.538	450659.51	166158.00	
7766	지적도근점	551020.219	166358.609	450714.01	166288.07	
7767	지적도근점	550755.544	165517.031	450449.33	165446.48	
7768	지적도근점	550816.299	165691.463	450510.09	165620.92	
7769	지적도근점	552029.802	165168.679	451723.57	165098.07	
7770	지적도근점	551898.929	165157.921	451592.70	165087.31	
7771	지적도근점	551799.107	165187.077	451492.88	165116.47	
7772	지적도근점	551823.683	165340.316	451517.46	165269.71	
7773	지적도근점	551806.243	165492.044	451500.03	165421.44	
7774	지적도근점	551877.468	165664.371	451571.27	165593.78	
7775	지적도근점	551752.894	165719.464	451446.70	165648.88	
7776	지적도근점	551569.459	165169.801	451263.25	165099.23	
7777	지적도근점	551586.709	164981.788	451280.50	164911.21	
7778	지적도근점	551569.341	164839.581	451263.13	164769.00	
7779	지적도근점	551586.182	164710.120	451279.97	164639.54	
7780	지적도근점	551695.304	164716.799	451389.08	164646.22	
7781	지적도근점	551808.962	164711.865	451502.72	164641.28	
7782	지적도근점	551806.333	164870.180	451500.09	164799.59	
7783	지적도근점	551823.658	165018.820	451517.42	164948.2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1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 구축과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임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규 제정하고자 입법 예고합니다.

2013. 2. 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주요내용
 - 가.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7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나.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개최와 위원의 의무,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3. 공고기간 : 2013. 2. 4 ~ 2013. 2. 28 (24일간)
4.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기타 문의 사항은 서구청 녹지경관과 녹지팀(☎ 032-560-47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2013-1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재난관리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련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과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④ 제3항 규정에 따라 해촉 될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전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전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상정안전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전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전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전을 심의한 결과 안전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현지조사)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9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전의 작성, 상정안전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16조(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결과

1. 심의 번호 :

2. 심의 대상지

- (1) 소재지 :
- (2) 지정 면적 :
- (3) 피해 유형 :
- (4) 위험 등급 :
- (5) 피해 내용 :

3. 심의 결과

심의 항목	심의결과		
	적정	보완	부적정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적정성			
(5)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4. 심의위원 의견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160호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계획공고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0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융자계획

- 가. 융자금 총액 : 760백만원 이내
- 나. 융자금 용도 : 도시가스수용가 신규시설 설치자금
- 다.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융자금 소진 시까지(연중 수시)
- 라. 대출한도액 : 가구당 최고 500만원 범위 내(실비용)
- 마. 취급은행 : 신한은행 서구청 지점
- 바. 상환기간 : 3년 균등분할상환
- 사. 대출금리 : 년 7%(자부담 2%, 구지원 5%)
- 아. 자격요건 : 2013년 도시가스수용가 신규시설 설치자로서
관내 해당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주여야 함

2. 융자대상자 선정

- 가. 융자불가자를 제외한 신청인에 대하여 융자대상자로 추천
- 나. 융자대상추천자로서 신한은행 여신규정에 결격사항이 없는 자
- 다. 융자제외 대상 : 무허가(위법)건축물, 아파트, 공급관이 없는 지역,
신청인이 건물주가 아닌 경우

3. 용자대상 우선순위

- 가. 단독주택
- 나. 다가구주택
- 다. 다세대(연립주택)
- 라. 상가주택(주택부분)

4. 서류 제출처 및 처리절차

- 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주민은 사전에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인천도시가스사(주)에 확인(☎570-7806)
- 나. 서구청 경제지원과, 동사무소 또는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
- 다. 구비서류(신청서, 시공계약서 및 도시가스접수필증 사본 1부)
- 라. 구에서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용자대상자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추천결과를 신청인 및 취급은행에 통보

5. 기타사항

- 가. 자금의 상환, 사후관리,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협약은행과의 협약서에 의거 시행.
- 나. 문의처 : 서구청 경제지원과(에너지관리팀, ☎560-4463)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3 - 123호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고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승인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2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승인일자 : 2013. 1. 28.
2. 관리계획 변경의 주요내용
 - 계획의 범위 : 인천광역시 관할 개발제한구역 72.808km²
 - 계획기간 : 2012년 ~ 2016년 (5개년)
 - 주요 내용

구 분	시 설 명	사업시행자	위 치	형질변경 면적(m ²)	연면적 (m ²)	비고
선형필수 시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8정거장	인천광역시장	서구 검암동 244-24번지 일원	1,323.2	878.03	
선형필수 시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9정거장	인천광역시장	서구 연희동 94-6번지 일원	4,426	2,549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서구 도시개발과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